

「2024년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인천공항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연계해 인천공항 미래가치 창출을 함께할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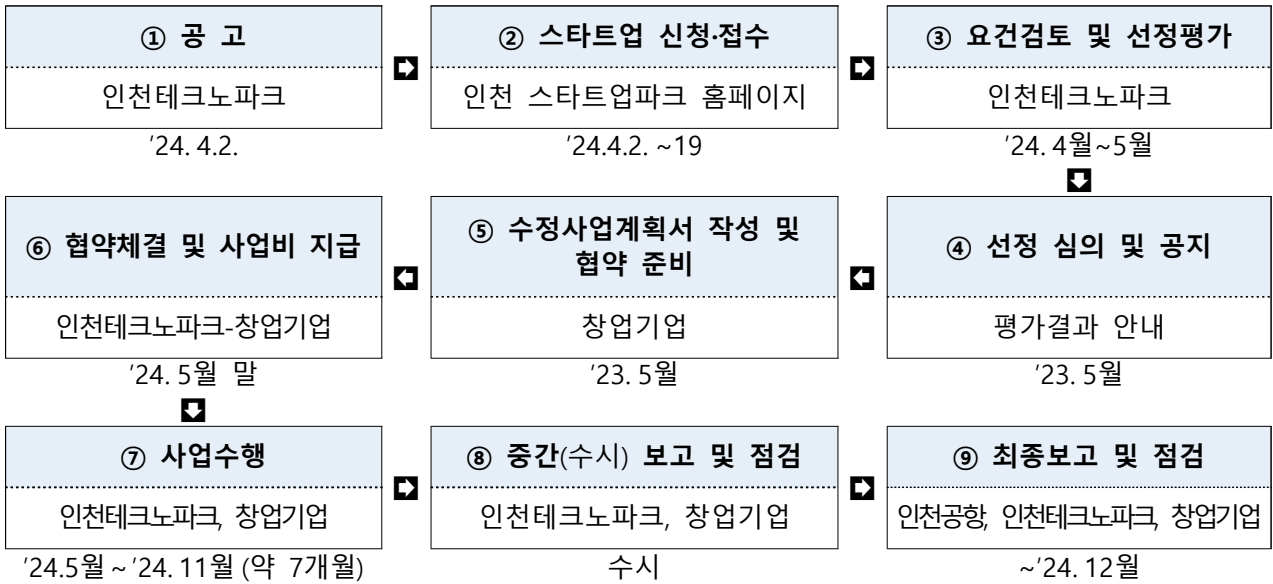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혁신적 기술 및 제품(서비스)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인천지역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본사 기준)
※ 신산업 창업분야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
- (지원규모)** 7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7백만원)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분야)** 사회서비스, 문화콘텐츠, 인천공항, 친환경(1개 분야 필수 선택)

분야	세부내용
사회서비스	•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 및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문화콘텐츠	• 인천공항 및 영종도, 인천지역에 적용 가능한 문화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서비스
인천공항	• 공항 건축, 수하물, 항공보안, 운항안전 등 공항 운영 시스템 혁신
친환경	• 환경을 유지하면서 자원 소비, 에너지 사용, 폐기물 생성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소재 기업(본사 기준)

- ※ 인천이 본사가 아닌 기업은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에 본사 이전 완료시 지원 가능(확약서 제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2024.4.2.)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①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②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산업 창업분야* 10년 이내 기업

- ※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지원 제외 대상

- ☞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2020 ~ 2023)
-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 본 과제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 사업 협약체결 이후라도 발견 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 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 (단,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제외)
- ☞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 아이템(과제)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제품/서비스 고도화 자금 최대 37백만원 지원
 - 사업화 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사업비 집행비목 >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특화프로그램 :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1	스타트업 솔루션 리빙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 실제 서비스에 수요자 개선의견/서비스테스트 도출 · 서비스 고도화 및 개선 전략 수립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테스트 ○ 서비스에 대한 성과검증 및 마케팅
2	네트워킹	○ 창업기업 간 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킹 활성화
3	성과 공유제	○ 인천국제공항공사-선정기업 협약을 통해 성과공유,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지급

※ 스타트업 솔루션 리빙랩 : 스타트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솔루션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검증하고 고도화하여, 실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적용

□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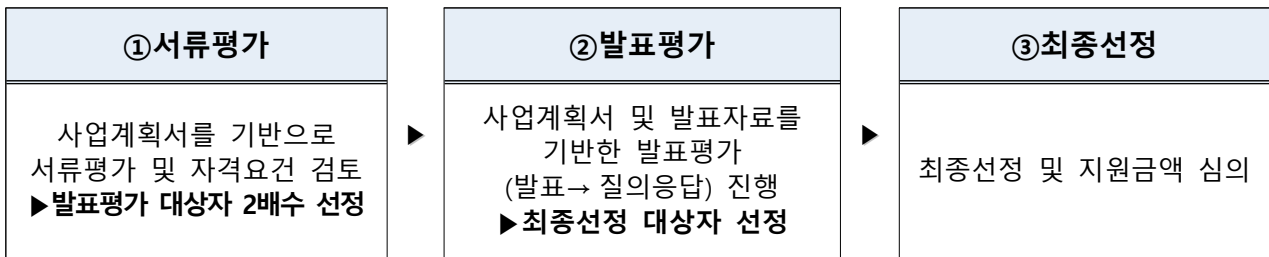
공모	스타트업 솔루션 리빙랩			최종점검
기업 선정	분석 및 발표	개선사항 도출	서비스 개선	서비스 점검
7개사	스타트업 서비스/제품 분석 및 발표	서비스 고도화 및 개선 전략 수립	서비스 개선 및 국내외 마케팅	서비스 성과검증
2024. 5	2024. 5 ~ 11			2024. 12

4

선정평가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 적격기업 없을 시 재공고 추진, 사업 중단기업 발생 시 차 순위 또는 재공고를 통해 기업선정

□ (평가기준) ①창업사업화(60%) 및 ② 인천공항 및 지역문제(40%)로 평가

창업사업화 평가기준		인천공항 및 지역문제 특화 평가		
60점	1. 문제인식(Problem)	+	40점	
	2. 실현가능성(Solution)			• 인천공항과 사업아이템의 연계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3. 성장전략(Scaleup)			• 지역문제의 해결방안 적절성
	4. 기업구성(Team)			- 지역문제 및 이해당사자 식별 - 지역문제의 근본원인 - 해결방안의 우수성, 효과성 등

※ ESG 분야 해당 시 가산점 2점(서류평가만 적용)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지표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 4. 2. ~ 4. 19.(금) 17:00 까지

※ **유의사항**

- 1)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인천 스타트업파크(<http://startuppark.kr>) 가입(기업회원/개인회원)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2) 사업신청시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 가능하며,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접수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 3)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접수마감 시간(17: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 **(신청방법)** 인천스타트업파크(<http://startuppark.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청서 포함) 및 관련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개인정보 및 창업유지 동의서, 신분증 포함 	
필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해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발급처) 홈택스 등
	완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 	
해당시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기타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증, 지재권 등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벤처창업사업단 혁신창업센터

(☎032-858-6581 / peace@itp.or.kr)

- 선정자는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협약내용 및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 지침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협약 등 관련 내용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인천테크노파크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선정평가 과정 중 확인되면 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선정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선정 취소 및 협약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http://startuppark.kr>)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금융결재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해당 공고 게시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공고문 및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점)
인천공항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사업아이템과 공모분야의 적합성 ※ 공모분야: 사회서비스, 문화콘텐츠, 인천공항, 친환경 인천공항공사 業(업)과 사업아이템의 연계 방안 제시 	10
지역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적절성 지역문제 및 이해당사자 식별 지역문제의 근본원인 해결방안의 우수성, 효과성 등 	30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15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20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5
기업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10
ESG 분야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분야 : 기후변화와 탄소, 환경규제·생태계 등 S분야 : 사회책임, 안전·보건·인권·다양성 등 G분야 : 법규·준법·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조 등 ※ 한 분야 이상 해당 시 가산점 2점 부여 	2
합계		100+2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지표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서류평가만 가산점 적용)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